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

교통위원회 김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의원들 앞에서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 법은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 복도가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방사다리가 진입하고 또 외부로 나가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피난계단이나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1)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피난계단설치 의무의 예외인 ‘갯복도식 공동주택’에 ‘여닫을 수 있는 새시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하고 2)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에서도 같은 정의를 하도록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건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